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수득표자의 당선인결정방식을 결선투표로 변경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4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2. 동수득표 시 당선인 결정 연혁	4
3. 동수득표 시 외국의 당선인 결정 사례	5
4. 종합검토	7
[참고자료] 조문대비표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최고득표를 하더라도 연소자는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근거일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참여가 사회적 요구인데,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 다.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를 결선투표운동기간으로 하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1회, 경력방송은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3호 등).
- 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가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3일까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 마.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88조제1항 단서, 제190조 제1항 단서, 제191조제1항 단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동수득표자의 당선인 결정방식을 연장자에서 결선투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당선인을 제외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¹⁾

개정안에 따라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동수득표자가 있을 경우 동수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게 됨.

개정안에 따르면 결선투표는 각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

1)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고, 그에 따라 각 선거기간이 14일씩 증가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각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게 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결선투표일	-	선거일 후 <u>14일</u> 째 되는 날
선거기간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u>14일</u>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u>14일</u>
결선투표 도입 시 선거기간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u>28일</u>

2. 동수득표 시 당선인 결정 연혁

우리나라는 입법연혁상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음. 1950. 4. 12.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1980. 12. 31. 제정된 「대통령선거법」, 1988. 5. 1.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0. 12. 31.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94. 3. 16. 제정된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뜻함) 등에서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다만, 1948년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득표수가 동수인 경

우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이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 바 있음.

연장자 당선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도 있는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가 1,162표로 동수 득표하였고 최종적으로 연장자인 후보가 당선된 바 있음.²⁾

3. 동수득표 시 외국의 당선인 결정 사례

최고득표수가 동수일 때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는 추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상원 및 하원의원의 경우 최고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지역구의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문옥희 후보(1942년생)와 이수하 후보(1953년생)가 1,162표로 동수를 득표하였고 연장자인 문옥희 후보가 당선인이 됨.

<당선인 결정방식 해외사례>

국 가	내 용
영국	최고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u>추첨</u> 으로 당선인을 결정
프랑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그 가운데 <u>최고연장자</u> 가 당선인이 됨 (상원의원, 하원의원)
독일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선거구선거위원장이 <u>추첨</u> 에 의해 결정 (지역구의원)
일본	당선인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u>추첨</u> 으로 정함 (비례대표선출의원) ※ 선거회는 당선인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선거회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개표소에서 행한 투표의 점검 및 확인결과에 따라 각 후보자 등의 득표총수를 계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며, 도도부현청, 시청, 정촌사무소 등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함
스페인	각 후보자명부의 득표수가 같다면 처음에는 <u>추첨</u> 으로 결정하고, 이후 부터는 번갈아가며 배정함(하원의원)
스웨덴	의석수 배분 시 같은 수가 나오면 <u>추첨</u> 으로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 또는 어느 선거구가 의석을 가질지, 어느 의석을 재배분할지 결정함
스위스	2명 이상의 후보자가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그 의석은 <u>추첨</u> 으로 배분
캐나다	최다득표자가 2명인 경우 선거관리청장은 즉시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없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하원의장(하원의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2명의 하원의원)에게 보내야 함. 또한 관보에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들의 이름과 함께 득표수가 동일하여 해당 선거구 당선자가 없어 캐나다 의회법(the Parliament of Canada Act)에 따라 <u>보궐선거</u> 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실시 중인 국가로는 프랑스와 독일을 들 수 있고, 프랑스는 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과 데파르망의 지사는 중앙에서 파견하며 가장 작은 단위인 코뮌

시장의 경우 1차 혹은 결선 투표에서 절대과반을 득표하는 비례명부의 대표가 맡도록 하고 있음.

독일은 자치단체의 장은 대도시 자치주 외에 13개 일반주에서 모두 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고 그 중 10개 주에서 상위 2명이 결선투표(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절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제 외국 사례>

대륙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국가
유럽	프랑스, 독일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종합 검토

현행 연장자 당선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연소자 후보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³⁾ 현 규정이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투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투표, 재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한 다른 합리적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도 있음.⁴⁾

3) 이러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규정은 재투표의 방법, 추첨의 방법 등이 가능하고 후보자 개인이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는 ‘연령’ 기준 이외에 후보자의 노력, 능력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다른 평가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당선을 결정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차별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임.(김덕현, 「공직선거법 상 연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성 검토 -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 ‘2인 이상 최고득표시 연장자 당선’ 규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권 제15호, 2015)

4) 국제노동법연구원, 「연령, 학벌, 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이에, 개정안은 위와 유사한 취지에서 연소자, 구체적으로 청년 계층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임.

결선투표제는 선거권자가 최종적으로 당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에 보다 충실한 선거제도가 될 수 있으며, 절대다수의 득표가 확보된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결선투표제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난립과 정치분열의 조장, 후보 간의 연대와 제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왜곡이라는 문제점 또한 제기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선인 결정을 하는 방법은 현행 방법 외에 추첨이나 개정안에 따른 결선투표(재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방식이 갖는 합리성, 헌법과의 정합성, 국민적 공감대,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21., 의안번호 제3037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상대다수대표제는 선거권자의 다양한 집합적 선호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직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당선인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선거 불복, 이로 인한 정국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자료]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선거기간) ①選舉別 選舉期間은 다음各號와 같다. 1. (생략)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 14일	제33조(선거기간) ①----- -----. 1. (현행과 같음) 2. ----- -----14일 (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8일)
②·③ (생략) 第34條(選舉日) ①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은 다음各號와 같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第34條(選舉日)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및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선거

1. ~ 5. (생략)

<신설>

제64조(선거벽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이하 “결선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선투표운동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음)

②-----

-----5일(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표 확정일 후 3일)-----

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③ ~ ⑫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 ~ ⑤ (생략)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 -----

-----.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12
면(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및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 6면)-----
-8면(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의 경우 4면)-----.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현행과 같음)

2. -----
-----7일[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 ~ ⑭ (생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候補者と 候補者が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の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3.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

候補者が 1회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2회 이내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이하 이 호에서 “결선투표”라 한다)는 결선투표 확정일 후 3일]-----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결선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7일 전)-----
-----.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2회 이내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市・道知事選舉	5. -----
候補者が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u>5회</u> 이내	----- ----- ----- <u>5회</u> 이내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② ~ ⑬ (생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第73條(經歷放送) ① (생략)	第73條(經歷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經歷放送 回數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다음 各號의 1에 의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	2. ----- -----
각 <u>2회</u> 이상	-- <u>2회</u>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
3. 市・道知事選舉	3. -----
각 <u>3회</u> 이상	-- <u>3회</u>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	②-----제59조제1항제2호----- ----- ----- ----- ----- ----- -----

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 (생략)

② 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選舉運動은 夜間(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생략)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 地域區國會議員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제1항제4호-----

-----.

③ (현행과 같음)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

-----.

-----최고득표
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이하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서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

⑦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의 規定은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당해 選舉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을 포함한다)------.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마지막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서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고득표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마지막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이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라

② (생략)

<신설>

③第187條(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그 選舉區”로 본다.

④ ~ ⑨ (생략)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

한다)를 실시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망·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결선투표의 실시 및 당선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포함한다)-----

-----.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

의 決定・公告・통지)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생략)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第194條(當選인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第187條(大統領當選인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

의 決定・公告・통지) ①-----

-----.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을 포함한다)-----
-----.

第194條(當選인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人の 決定・公告・통지)・제190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

제4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국회의원선거(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 ~ 5. (생략)

② ~ ⑦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생략)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

-----.

-----.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

-----.

1. 제59조제1항제2호-----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9조제1항제2호-----

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 ~ 너. (생략)

2. ~ 4. (생략)

④ · ⑤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3. ~ 5. (생략)

④ ~ ⑫ (생략)

다.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ㄱ.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2호-----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선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